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윤재옥의원·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6661호)

2024. 5.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재옥의원·홍익표의원 등 24인
2. 발의연월일 : 2024. 5. 1.
3. 회부연월일 : 2024. 5. 1.

II.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사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은 법 제정 이후 조사기구 설치 등 실질적 행정절차 착수가 필수인 바, 교섭단체간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쟁점을 해소하고 합의된 법안을 발의함.

Ⅲ. 주요내용

- 가. 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 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다.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7조제1항).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 마.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 바.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IV. 검토의견

제정안은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려는 것임.

10·29이태원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열린 축제를 앞두고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리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국내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기록되고 있음.

한편, 2024년 1월 9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515호)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2024년 1월 30일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음.

제정안은 2024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쟁점을 해소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봄.

[교섭단체간 합의 내용]

해당 조문	‘24. 1. 9 의결된 본회의 수정안의 내용	교섭단체 합의내용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및 제2항	- 위원 수 : <u>11명</u> · 국회의장이 <u>관련 단체 등과</u> 협의하여 추천 : <u>3명</u> ·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 : 4명 · 그 외 교섭단체 추천 : 4명	- 위원 수 : <u>9명</u> · 국회의장이 <u>각 교섭단체와</u> 협의하여 추천 : <u>1명</u> ·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 : 4명 · 그 외 교섭단체 추천 : 4명
제28조(조사의 방법) 제7항제3호	조사기록 등의 열람 등을 통한 조사방법의 대상에 포함 <u>3.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u>	조사기록 등의 열람 등을 통한 조사방법의 대상에서 <u><삭 제></u>
제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회)	조사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음	<u><삭 제></u>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반영한 수정내용 관련 조문대비표]

‘24. 1. 9. 의결된 본회의 수정안	제정안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u>11명의 위원으로</u>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u>추천하는 11명</u>(국회의장이 <u>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u>, 대통령이 소속되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u>9명의 위원으로</u>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u>추천하는 9명</u>(국회의장이 <u>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u>, 대통령이 소속되거

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 5. (생략)

③ ~ ⑥ (생략)

제28조(조사의 방법) ① ~ ⑥ (생략)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9조 및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 5. (원안과 같음)

③ ~ ⑥ (원안과 같음)

제28조(조사의 방법) ① ~ ⑥ (생략)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9조 및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확인된 사실

3.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
건

제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회) ① 조사위원회는 10·29이
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조사위원
회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
상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
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는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확인된 사실

<삭 제>

<삭 제>

조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
퇴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
를 조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
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검
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지체 없이 조
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
다.

문 의 처

02)6788-5344